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의안번호 : 제 99-21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조례, 규칙, 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폐지(안 제5조제3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 폐지(안 제13조, 제6호)

○ 제45조제2호 및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심의규정 폐지(안 제46조)

3. 검토의견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988년 2월 24일(조례 제953호)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 본 조례 내용 가운데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5조 3항 내용 일부 개정과 제13조 (사용허가 조건) 6호를 삭제하고 제45조는 2호, 3, 5, 6, 7호를, 그리고 제46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법에 근거 없거나, 규제나 위임권 남용, 그리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행정규제 업무 일체정비 계획에 따라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참고사항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99.5.8)